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5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김태호·조승환·김종양

신성범 • 김성원 • 엄태영

박충권 · 정동만 · 서범수

박대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30조의6에 따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6(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 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장비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 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제21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제30조의6에 따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u><신 설></u>	제30조의6(중증외상 전문의 수련
	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
	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
	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으로 그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u>야 한다.</u>
	③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
	<u>부령으로 정한다.</u>